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7. 9. 26.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7년 9월 12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1일
- 라. 상정일자 :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9. 2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 가. 제안이유

-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과 자치법규 정비사항 통보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 전파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법률의 위임 없는 취소(침해적) 규정 삭제
  - 법률의 위임 없는 전통시장 인정취소(제11조)
  - 법률의 위임 없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제19조)

- 법률의 위임 없는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제23조)
- 법률의 위임 없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제29조)
-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침해적) 규정 삭제
  - 법령의 근거 없이 정관 변경방법 및 제출의무를 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법령의 근거 없이 상인회 변경사실 제출의무를 부과 (제22조제3항)
  - 법령의 근거 없이 서류제출 및 보고의무를 부과(제27조)
- 기타 자치법규 입안기준 불일치 사항 정비
  - 조례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1조)
  -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 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안 제5조제3항)
  - 해석 오인의 여지가 있는 제22조제1항의 ‘정부와 시·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문구 삭제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서식 정비 (안 제36조 ~ 안 제42조)
-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 각 호, 안 제6조제1항제2호, 안 제12조~안 제15조, 안 제30조 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묵)

-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과 자치법규 정비사항 통보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전파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일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법률의 위임 없는 침해적 취소 규정인 안 제11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안 제19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안 제23조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 안 제2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법률의 위임 없는 침해적 의무 규정인 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정관 변경방법 및 제출의무, 안 제22조제3항 상인회 변경사실 제출 의무, 안 제27조 서류제출 및 보고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기타 자치법규의 입안기준에 따라, 불일치 사항 정비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목적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의 ‘정부와 시· 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란 문구 삭제로 해석상 오인 여지를 없앴으며, 상위법령 중복규정인 안 제36조부터 안 제42조까지와 별지를 삭제하였음.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각 호, 안 제6조제1항제2호,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안 제30조 제1항을 정비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해석오인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여 국민의 이해도 및 권리 향상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68 호
----------	---------

제출연월일 : 2017.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률의 근거가 없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 상인회의 정관 변경방법 및 제출의무 등의 규정 정비
- 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의 정비
- 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의 현행화
-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7.8.10. ~ 8.30.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건축、소방、도로법**”을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을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을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권 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를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권 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절차)**”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권 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를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권 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0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36조 앞에 “제9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삭제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u>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상인</u>”이라 함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u>점포</u>”라 함은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p> <p>3. “<u>임시시장</u>”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에 서울특별시 영등</p>	<p>제2조(정의) ----- -----.</p> <p>1. ----<u>이란</u> ----- ----- ----- ----- -----.</p> <p>2. ----<u>란</u> ----- ----- ----- -----.</p> <p>3. -----<u>이란</u> ----- ----- ----- ----- -----.</p>

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  
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  
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  
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 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  
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  
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  
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  
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  
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을 지원받아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  
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  
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  
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  
-----  
-----.

4. -----란 -----  
-----  
-----  
-----  
-----  
-----  
-----  
-----  
-----  
-----.

5. -----  
-----  
-----이란 -----  
-----  
-----  
-----  
-----  
-----.

6. -----이란 -----  
-----  
-----  
-----  
-----  
-----.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④、⑤ (생략)

-----.

7. -----란 -----

-----  
-----  
-----  
-----  
-----  
-----  
-----.

8. -----란 -----

-----  
-----  
-----.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 5. (생략)

② (생략)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4장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

제12조(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 상권 활성화 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3조(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삭제>

<삭제>

제4장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 활성화구역-----  
-----  
-----.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 활성화구역-----  
-----  
-----.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9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  
-----  
-----.

제14조(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상권 활성화 구역-----  
-----  
-----  
-----  
-----  
-----.

제15조(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 상권 활성화 구역-----  
-----.

<삭 제>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생략)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안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안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0조

-----  
-----  
-----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삭제〉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삭 제〉

1. 시장 관할구역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법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개정 2015.06.11>

2.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 태만으로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삭제>

<삭제>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9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38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  
----.

1. (현행과 같음)
  2.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제38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삭제>

<삭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  
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  
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제3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 <삭 제>  
은 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른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 제>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 <삭 제>  
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1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삭 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